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수입검사제도와 대책

高重熙*

사우디아라비아는 '95년 11월 8일부터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신규 수입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수입검사를 수출당사자의 시험검사에 의존 하던 제도를 이제는 SASO(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nchcape Testing Services International Limited(ITS)와 계약을 통해 전적으로 ITS의 수입검사를 통해 수입하는 선적전 검사제도로서 수출업자의 상당한 추가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타국이 존중하는 것이 국제적인 도리라 본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지금까지의 제도를 자국민의 보호라는 이유로 보다 까다롭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다 높은 무역장벽을 쌓게 되면 세계적인 추세인 WTO 취지에 어긋난다 볼 수 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검사제도를 다른 국가와 검토 비교하여 보고 타국에 비해 보다 엄격하고

난해한 제도를 확립했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며, 각 국가끼리 연합하여 시정토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일 것이다. 아물든 이런 방안은 최후의 방안이므로 우선 현재의 제도를 검토하여 대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보인다.

그 적용방법이 선적전 수입검사제도로서 매 선적시마다 검사를 받게 되고 SASO가 지정한 규제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게 되는 제조업자는 등록을 하여야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보다 까다로운 검사를 거치게 되어 막중한 시험검사비와 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볼때 기존 수출업자에게는 상당한 추가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복잡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여기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검사제도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의 국제적 적합성 인증프로그램

○ 개요

SASO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

* 國立技術品質院 標準計量部 國際標準計量課 事務官待遇

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입되는 특정 규제상 품의 품질을 규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수출업자가 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 SASO는 잘 정비된 폭넓은 제품 규격을 갖고 있으며 이 지침의 규격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이 규격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업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상품을 선적전에 SASO의 적합성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이 SASO 지침은 건강이나 안전의 위해가 없는 고품질의 제품을 보증하게 되어 모든 참여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제조업자는 “SASO의 품목명세서”(SASO Listing)에 등록할 수 있어 이 품목에 등록되면 품질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게 되어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그 제품을 더욱 높게 위치시킬 수 있다.

이 품목에 등록된 제품을 수출하게 되는 수출업자는 검사절차가 간소화되어 더욱 신속히 SASO의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업자는 상품을 거절의 위험없이 보다 신속히 세관을 통관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SASO의 국제적 접합성 인증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분리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 SASO 품목명세서(SASO Listing) 등록절차

제조업자가 제품을 등록시키길 원하는 경우에는 별첨 D에 첨부된 지역사무소를 통해 프로그램 관리자와 접촉하여야 한다. 동

프로그램 관리자는 품목명세서와 허가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게 된다.

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은 선적전 검사시 특별한 고려가 되어지며 시험의 필요성이 최소화되고 세관 통관절차가 감소화될 것이다.

· SASO 적합성인증서 발급절차

사우디아라비아에 규제상품을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선적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득된 인정마크나 제품마크에 따라 여러 수준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만일 선적시 SASO 요구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SASO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인증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을 통관하려는 제품의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든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충분히 모든 규제사항과 요구조건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요구조건에 모든 최종구매 주문이나 이와 동등한 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 권고된다.

수출업자는 우선 참여시험소에 서면 요청서를 송부하여 그 규제제품에 대한 필요한 시험이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는 선적전에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어야 함을 미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검사요청에 따라 적절한 “참여시험소”는 수출업자에게 “독특한 참조화일”을 제공하며, 수출업자가 모든 관련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상호 편리한 검사일정을 짜게 된다.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상품은 다음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 SASO 등록품목명세서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 제품의 시험검사절차

상품은 품질, 수량, 포장 및 마크 부착과

관련하여 구매주문 및 산업표준과 일치하는지 검사되어야 한다.

상기 기술된 검토에 추가하여 참여시험소는 등록된 규제제품이 순수하며 변함없는 조건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을 위해 샘플이 채취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SASO 등록품목명세서에 등재되지 않은 규제제품의 시험검사절차

이들 제품은 상기 기술된 검사절차에 추가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SASO 요구조건에 맞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선적전 검사 및 시험의 성공적인 완료에 따라 SASO 적합성인증서가 수출업자에게 발급될 것이다.

선적시 확립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그 결함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허용할 만한 수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수입업자는 이를 승락하고 선적이 거부될 것이다.

2. 규제제품 및 참여시험소

- 규제제품의 명세는 별첨 A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 참여시험소의 명세는 상세히 별첨 B에 등재되어 있다(참여시험소는 Europe 21개국에 36개, North America 3개국에 27개, South America 6개국에 7개, Asia Pacific 16개국에 22개, Middle East & Africa 5개국에 6개로 모두 51개국에 98개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Asia Pacific 지역의 시험검사소만 소개하였다).
- 상세한 프로그램의 주요단계 흐름도표는 별첨 C에 있다.
-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의 연락처가 별첨 D에 수록되어 있다.

3. SASO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

ITS는 SASO에 의해 SASO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명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의 책임은 SASO에 의해 승인받은 참여시험소와의 조정역할뿐 아니라 참여시험소의 업무를 점검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 지침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련 정보가 모든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동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목적에서 ITS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나 개선에 대해 제조업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어떤 접촉도 환영할 것이다.

4. 시험 및 검사절차

이 지침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규제제품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의 최초의 단계는 첨부 C의 흐름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절차에 더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업자는 규제제품과 관련하여 모든 SASO 요구조건을 충분히 수출업자에게 자문해 줄 것을 권고받는다. 최소한으로, 시험이나 검사의 요구조건은 모든 구매주문, 계약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매주문의 접수에 따라 수출업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해 서면 요청으로 별첨 B에 등재된 가장 적절한 참여시험소와 우선 접촉하여야 한다.

(3) 수출업자는 구매주문 제품을 다를 가장 가까운 참여시험소를 우선 접촉하여야 한다. 만일 접촉한 시험소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별첨 D에 등재된 프로그램 관리자의 가장 가까운 지역사무소를 접촉하여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 시험소는 별첨 E의 인증요청서를 FAX 송부하

는데, 이 수출업자는 송장, 양식, 구매주문서, 구매계약서 등의 복사본에 따라 다시 시험소에 완성하여 돌려주게 된다.

(4)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안된 상품의 선적일자일 것이며 그 상품이 시험되거나 검사될 첫번째의 이용가능일자일 것이다.

시험소는 인증요청서의 하단 부분을 완성하여야 한다.

(5) 시험소는 독특한 참조화일이 할당되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자의 가장 가까운 지역사무소에 완성된 인증요청서를 제출한다. 또 하나의 시험소에도 시험이나 검사 책임이 할당될 수도 있다.

(6) 참조화일의 접수에 따라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시험소는 참조화일을 알려주고 상품을 시험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적절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수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7) 상품에 대한 시험수준은 다음과 같이 여러 요인에 의존한다.

- 제조업자의 제품이 SASO 품목명세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제조업자의 제품이 SASO 품목명세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다른 적절한 인정된 인증기관 또는 그와 같은 기관의 인증마크를 받았는지 여부
- 제조업자의 제품이 SASO 품목명세서나 다른 관련품질마크를 받았는지 여부
- 관련제품의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국내규격이 국제규격을 적용하는지 여부
- 시험이나 검사요구조건을 지지하기 위한 시험소에 의해 요청받을 수 있는 기타 다른 전무적인 정보나 문서가 있는지 여부

(8) 수출업자로부터 관련정보의 접수에 따라 시험소는 수출업자에게 시험이나 검사요구조건을 알려줘야 한다. 수출업자는 샘플

및 관련서류가 관련시험소에 배포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의 책임을 진다.

(9) 모든 시험소에 의한 모든 제품시험은 상기 7항에서 나열한 요소에 따른 제품에 적용할 각기 다른 시험수준을 다루게 될 확립된 표준절차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시험절차 및 업무는 또한 상품이 규제제품의 각각에 대해 관련 SASO 표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수출물량이 상당할 경우, 시험요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되는 SASO 품목명세서하에서 제조업자에게 별도로 자기 제품의 등록절차를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이 수출업자의 가장 좋은 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1) 제품의 시험이나 검사가 편차나 불규칙성 또는 기타 그러한 결함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시험소는 수출업자에게 수정조치 및 그 상세한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12) 시험이나 검사가 말족할 만한 결과가 생산된다고 가정될 경우 시험소는 적합성 인증서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규제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서류이다. 인증서의 초안이 검토되고 권한있는 코드가 생산되도록 프로그램 관리자의 적절한 지역사무소에 FAX로 송부될 것이다.

(13) 일단 시험소가 권한코드를 부여받으면 수출업자에게 발급될 최종의 원본인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한다.

(14) 차례로 프로그램 관리자는 관련시험이나 검사데이터와 적합성인증서를 SASO에 보내는데, SASO는 수입업자가 규제제품의 빠른 통관을 확인하기 위해 세관에 보낼 통관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어느때라도, 제조업

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의문이나 관심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의 관련 지역 사무소나 참여시험소에 문의하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것이다.

주석1: 채취된 상품이 검사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는 검사목적의 시료채취와는 달리 시험소에서 분석목적으로 채취한 샘플은 거의 항상 파괴시험 형태로 수행된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는 시험소 시험을 위해 채취되는 제품의 손실을 초래하는 모든 부족현상을 보상할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석2: 필요한 경우, 수출업자는 시험소에서 검사/수출업자 현장까지 시험된 제품을 되돌려줄 때 드는 비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제3자 시험이나 검사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험이나 검사가 어떤 식으로든 송장이나 구매주문 등의 기간내에서 수입업자에게 의무감이나 책임의 어떤 것도 수출업자가 징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몇가지 예에서 보듯이 이런 조달 기간을 고려하면 제품시험 및 인증은 여러 주일이 걸린다.

5. 수수료

SASO의 국제적 적합성 인증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음의 두가지 주요절차와 관련하여 참여시험소에 제조업자나 수출업자에 의해 지불된다.

- SASO 등록품목명세서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등록허가 발급에 필요한 검사와 관련된 비용,

제품시험 및 연례 개선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SASO 적합성인증서 발급에 따른 규제제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대해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제품의 선적전 검사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의 시험검사비용을 포함하게 된다.

모든 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수출업자와 협상을 통한 신용조건에 따라 참여시험소에 지불해야 할 것이다.

SASO 등록품목명세서에 제품을 등록할 모든 허가사항의 배포나 SASO의 적합성 인증서의 발급은 신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2] 동 수입검사제도의 문제점 고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제도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개선사항으로 보다 복잡하고 수출업자에 부담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측 입장에서, 즉 수출하는 측에서 추가부담이 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줄이고 또 이에 대한 근본의 취지에 접근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보인다.

새로운 제도를 수립한 것이 새로운 기술장벽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다른 국가보다 수월하게 수출해 왔던, 다시말해 보다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볼때 오히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열악한 동남아 국가의 수출문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봄직하다.

[3] 합리적인 해결방안

(가) 한국의 시험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

현재 ITS와 KIMSCO간의 계약으로 KIMSCO가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SASO측과 협상을 통해 확대하여 KIMSCO가 직접 시험검사할 수 있는 화학제품분야와 농산물분야를 제외한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들면, ISO/IEC지침서(가이드) 25, 58 등의 기준에 의거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시험소를 SASO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현재 SASO와 우리 원과 표준화 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어느 국가보다 실현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재의 ITS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수료를 토대로 검토

- 현재 ITS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적합성 인증프로그램 등록명 세서에 등록하기 위한 신청비용은 매 공장마다 U\$ 500이며 시험수수료는 제품마다 다른 요율로 추가되게 된다. 또한 매년 명세서 개선수수료는 U\$ 1,430과 검사 개선비용이 U\$ 360(예 : 전자제품의 경우)으로 부과된다. 또한 선적시마다 일정률의 검사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여기서 매공장마다 부과되는 U\$ 500의 공장등록 수수료는 별개로 하더라도 매년 개선수수료 U\$ 1,430은 과도하게 드는 비용으로 협상에 의해 ISO/IEC지침서 25,28 등에 의해 공인받은 시험소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때 새로 도입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검사제도는 궁극적으로는 한·사우디간 제품 적합성에 대한 상호 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 진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4] 한·사우디 수출입현황

1.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100만달러)

구 분	교역량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수 지
'92	4,738	941	-4.0	3,797	16.2	-2,857
'93	4,679	944	0.3	3,735	-1.7	-2,791
'94	4,694	878	-7.0	3,816	2.2	-2,937
'95.1~11	5,878	981	1.0	4,897	2.2	-3,916

-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순위는 9위

- 주요수출품: 섬유류, 전기전자, 철강금속,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 주요수입품: 원유, 유류제품

2. 검사대상품목별 수출액

(단위 : 1,000달러)

구 룹	HS단위	대 상 품 목	수출액
식품 및 농업	03	어류	36
	16	고기가공제품	35
	0902	차	3
	1901.10	유아용 식품	981
	22	음료	141
	17	설탕	5,379
전기·전자	8415	가정용 에어콘	4,804
	8519.99	CD 플레이어	195
	8521	비디오카세트레코드	3,551
자동차 제품	8703	자동차	41,457
	7007	유리/유리닦기	9
	3819	브레이크액	3
	4011	타이어	41,305
화학제품	3209	페인트	60
	3303	향수 및 화장품	64
	3808	실충제, 구충제	7
기 타	76	알미늄과 그 제품	5,963
	7304	강철	183
	7106	금 및 은 보석	124
	6505	모자	355
	8424	소방기기	7
	8481	압력조절기	1,357
	4803	화장지	6,797
총 계			277,215 (28%)

()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입검사 대상품목(별첨 A)

제1군-식품 및 농산물(12품목)

번호	대상품목
I -01	영계(냉장 및 냉동)
I -02	양고기 및 기타 고기(〃)
I -03	소고기 및 기타 고기(〃)
I -04	고기 및 고기제품
I -05	치즈
I -06	쌀
I -07	차
I -08	식물성 기름 및 지방
I -09	유아용 식품(캔용)
I -10	비알콜음료
I -11	설탕
I -12	담배

제2군-전기전자제품(47품목)

번호	대상품목
II -01	가정용 에어콘
II -02	카셋트테이프녹음기
II -03	콤팩디스크 플레이어
II -04	비디오 카셋트 레코더
II -05	제너레이터(1000kW)
II -06	모터(12kW)
II -07	고무절연케이블(450/750V)
II -08	요리히터
II -09	가정용 전기세탁기
II -10	가정용 건조기
II -11	가정용 전기다리미
II -12	가정용 음식조리기
II -13	고기 썰개 및 분쇄기
II -14	엘리베이터
II -15	전자오븐
II -16	전기오븐(10kW)
II -17	복사기
II -18	컴퓨터
II -19	변압기
II -20	가정용 냉장고
II -21	전화기
II -22	전기케이블(100V)
II -23	진공소제기
II -24	전기히터
II -25	음료수 냉각기
II -26	공기냉각 증발기
II -27	국내 전기팬

번호	대상품목
II -28	냉각 유니트(콤프레서)
II -29	전기히터 유니트
II -30	전기소켓
II -31	스위치(30A)
II -32	관모양의 형광램프
II -33	형광램프 안정기
II -34	형광램프 점등기
II -35	플러그 및 소켓트
II -36	도로 및 거리용 전등
II -37	1차 건전지
II -38	수중 수영장 전등
II -39	1차 건전지 터미날
II -40	물펌프
II -41	TV 셋트
II -42	AC 어댑터(220/127V)
II -43	라디오
II -44	가정용 온수기
II -45	전력용 미터계
II -46	가정용 무선전화기
II -47	압력조리기

제3군-자동차 부품(4품목)

번호	대상품목
III -01	자동차
III -02	자동차 앞창유리닦기 및 유리
III -03	자동차 브레이크액
III -04	자동차 타이어

제4군-화학제품(4품목)

번호	대상품목
IV -01	모타오일 및 유압유
IV -02	페인트
IV -03	향수 및 화장품
IV -04	살충제, 구충제

제5군-기타(9품목)

번호	대상품목
V -01	알미늄 제품
V -02	강철 및 철합유 파이프
V -03	금부용, 금 및 은 보석
V -04	남성용 2종메일 면사포
V -05	소방기기
V -06	시멘트
V -07	안전성냥
V -08	압력조절기(캐스실린더)
V -09	화장지

특집

참여시험소 (별첨 B)

ASIA PACIFIC		Contact Name(s)
BANGLADESH	CALEB BRETT ICAB BHABAN(6TH FLOOR) 100KAZI NAZRUL, ISLAM AVENUE DHAKA, 1215, BANGLADESH	MR ATAUR RAHMAN TEL 880 2 815915 FAX 880 2 813025
CHINA	LABTEST SHENZHEN LTD 5/F BUILDING NO. 531 DAGUA 3 LU SHENZHEN, CHINA	MR HENRY YEUNG TEL 86 755 2264436 FAX 86 755 2260194
	LABTEST 4/F NO 2 BUILDING SHANGHAI COMALONG IND. I PARK NO 889 YISHAN ROAD, SHANGHAI CHINA	TEL 8621 483 0139 FAX 8621 483 0592
HONG KONG	LABTEST 2/F GARMENT CENTRE 576 CASTLE PEAK ROAD KOWLOON, HONG KONG	MR HENRY YEUNG TEL 852 274 68600 FAX 852 278 61903
INDIA	LABTEST 1/F, MYSORE ASSOCIATION BLDGS. 393 BHAUDAJI ROAD, MATUNGA BOMBAY -400 019, INDIA	DR MANJUNATH TEL 9122 402 6742 FAX 9122 401 0574
INDONESIA	LABTEST INDONESIA A DIVISION OF PT CITRABUANA INDOLOKA JALAN PEMUDA NO 66 2ND FLOOR JAKARTA 13220 INDONESIA	MS IMELDA YAO TEL 6221 871 7946 FAX 6221 871 7948
JAPAN	ITS QUALITY SYSTEMS(JAPAN) LTD. 7F EISHIN BUILDING, 2-31-1 KOTO-KU, TOKYO 135, JAPAN	MR YUICHI SEKIGUCHI TEL 81 3 5245 0651 FAX 81 3 5245 0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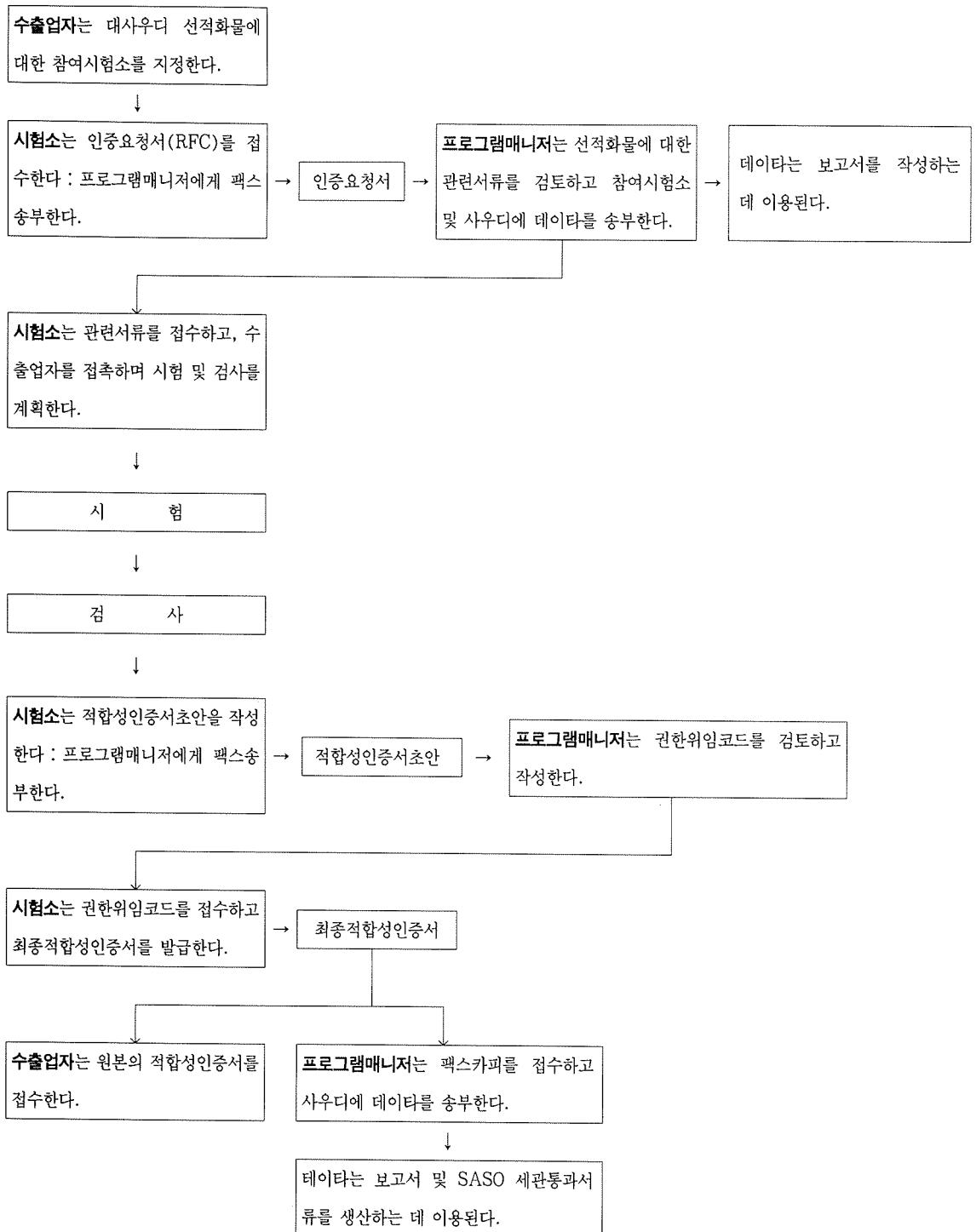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수입검사제도와 대책

ASIA PACIFIC		Contact Name(s)
	ITS QUALITY SYSTEMS SHIN OSAKA CHISAN BUILDING 8 FL., 1-26 NISHI-NAKAJIMA 7 CHOME YODOGAWA-KU, OSAKA 532, JAPAN	MS CHRISTINE TAM TEL 81 6 303 1650 FAX 81 6 303 1654
KOREA	KIMSCO RM, 603 DONGYANG BUILDING 112-6 SOGONG-DONG CHOONG-KU, SEOUL KOREA	MR M.H. YOO MS M. KIM TEL 82 2 774 8201 FAX 82 2 774 8208
MALAYSIA	LABTEST MALAYSIA NO 6, JALAN 51 A/223 46100 PETALING JAYA SCLNGOR DARUL EHSAN, MALAYSIA	CAPT. S.C. GOH TEL 603 756 4439 FAX 603 755 4627
PAKISTAN	SUPERINTENDENCE CO LTD 4 E SIDE, DINAR CHAMBER 12 W WHARF ROAD KARACHI, PAKISTAN	MR MUMATZ AHMAD TEL 9221 4945558 FAX 9221 6313614
PHILIPPINES	LABTEST ITS BLDG 2310 PASONG TAMO EXT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MR JUN MONTANO TEL 632 819 5841 FAX 632 816 1913
SINGAPORE	CALEB BRETT NO. 5 PEREIRA ROAD 06-03 ASIAWIDE IND. BLDG. SINGAPORE 1336	MR G.H. SIM TEL 65 382 8211 FAX 65 382 8661
	LABTEST NO. 5 PEREIRA ROAD 06-03 ASIAWIDE IND. BLDG. SINGAPORE 1336	MR DORIS YEO TEL 65 382 8211 FAX 65 382 6268
SRI LANKA	COLAG INSPECTION SERVICES LTD. 300-304 CALLE ROAD COLOMBO 3 SRI LANKA	MR NIMAL LOGANATHAN TEL 94 1 573551/2 FAX 94 1 575394

특집

ASIA PACIFIC		Contact Name(s)
TAIWAN	LABTEST 14/F HUEI FONG BUILDING 27 CHUNG SHAN NORTH ROAD SECTION 3, TAIPEI, TAIWAN ROC	MR ERNEST HSIA TEL 886 2 597 9955 FAX 886 2 595 8645
	CALEB BRETT TAIWAN 4/F., 31 CHUNG SHAN NORTH ROAD SECTION 3, TAIPEI, TAIWAN ROC	MR KEVIN SUNG TEL 886 2 598 1284 FAX 886 2 596 2749
THAILAND	LABTEST 5/1 PHAHOLYOTHIN 28 PHAHOLYOTHIN ROAD BANGKOK 10900 THAILAND	MR SUDONANG SARANAKOM TEL 662 939 0661 FAX 662 939 0668
	CALEB BRETT(THAILAND) LTD 5/1 PHAHOLYOTHIN 28 PHAHOLYOTHIN ROAD LARDYAO, JATUJAK BANGKOK 10900 THAILAND	MR LAKPONG TEL 662 939 0866 FAX 662 939 0732
AUSTRALIA	QUALTEST 810 PACIFIC HIGHWAY GORDON, NSW 2072 AUSTRALIA	MR BRIAN MALONE TEL 61 2 4980530 FAX 61 2 4992990
	CALEB BRETT SUITE 1, 4 PRINCES STREET PORT MELBOURNE VICTORIA 3207, AUSTRALIA	MR JOHN HANNAWAY TEL 61 3 646 9299 FAX 61 3 646 0308
NEW ZEALAND	M & I CARGO SURVEILLANCE LTD. PO BOX 2088 275 UPPER CUBA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MR IAIN MACLEOD or MR HOSHY DHONDY AT CALEB BRETT AUSTRALIA TEL 64 4 471 0661 FAX 64 4 471 0660

SASO 국제적합성 인증절차(별첨 C)



**Program Manager
Details of Regional Offices(별첨 D)**

ENGLAND

Inchcape Testing Services
Academy place
1-9 Brook Street
Brentwood, Essex CM14 5NQ
ENGLAND
Tel No. (44) (1277) 223255
Fax No. (44) (1277) 220127

Inchcape Testing Services
7270 NW 12th Street,
Suite 410
Miami, Florida 33126, U.S.A.
Tel No. (1) (305) 593-7455
Fax No. (1) (305) 593-1528

GERMANY

Inchcape Testing Services
Frankenstrasse 12
D-20097 Hamburg
GERMANY
Tel No. (49) (40) 235030
Fax No. (49) (40) 234421

BRAZIL

Inchcape Testing Services
Avenida Indianapolis 2181
04063
Planalto Paulista
Sao Paulo, BRAZIL
Tel No. (55) (1) 578-9200
Fax No. (55) (1) 578-7284

PERU

Inchcape Testing Services
Chinchon 918
San Isidro
Lima 27, PERU
Tel No. (51) (14) 33-8807
Fax No. (51) (14) 42-0496

SINGAPORE

Inchcape Testing Services
5 Pereira Road
Hex 06-03/04
Asiawide Industrial Building
Singapore 1336
Tel No. (65) 3828211
Fax No. (65) 3828662/2867074

TOKYO

Inchcape Testing Services
7F Eishin Building
2-31-1, Eitai, Koto-ku
Tokyo 135, JAPAN
Tel No. (81) (3) 5245-0650
Fax No. (81) (3) 5245-0480

SOUTH AFRICA

Inchcape Testing Services
1266 Bluff Road
Fynnland 4052
PO Box 21062
Fynnland 4020, Durban
SOUTH AFRICA
Tel No. (27) (31) 4664873
Fax No. (27) (31) 4664237

USA

Inchcape Testing Services
3741 Red Bluff Road
Pasadena, Houston
Texas 77503
Tel No. (1) (713) 475-2082
Fax No. (1) (713) 475-2082

ALL ENQUIRIES SHOULD BE
ADDRESSED TO THE SASO
PROGRAM MANAGER